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60
----------	-----

2016년 2월 2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1월 13일, 신언근 의원(찬성자 11명)
2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5일
3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6년 2월 24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신언근 의원)

1. 제안이유
 - 현재 서울시에는 많은 복지제도와 아동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빈곤 아동들이 많으며, 그 원인은 복지제도와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있음.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기존의 복지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바뀌어야하며,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빈곤아동들에 대한 신원파악이 우선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 5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1 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

- 본 개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임.

<신구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5조(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~② (생략) <신 설>	제5조(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2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

-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매년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‘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함)’을 수립해야 함.
- 본 개정안은 상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빈곤아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의 근거 자료를 통한 보다 실효성

있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,

그 입법취지의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며, 개정안 내용상 상위 법률과의 상충 또는 위반의 문제는 없음.

- 다만, 본 개정안에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, 향후 조례 이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빈곤아동에 관한 실태조사¹⁾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,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1) 상위 법률인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,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5년마다 ‘빈곤아동의 복지·교육·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’을 수립하여야 함.

▪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·교육·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빈곤아동의 복지·교육·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2.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
3.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▪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」 제3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.

1. 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·나이·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
3. 빈곤의 유형,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
4.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·교육·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신언근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96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월 13일

발 의 자 : 신언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박성숙, 진두생, 김혜련,
장홍순, 김구현, 김광수(노원),
이순자, 오경환, 이종필, 이승로
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현재 서울시에는 많은 복지제도와 아동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빈곤 아동들이 많으며, 그 원인은 복지제도와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있음.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기존의 복지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바뀌어야하며,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빈곤아동들에 대한 신원파악이 우선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~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5조(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제3항에 “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”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- 다만 참고를 위해 실태조사비를 추계한 자료(참고)를 첨부

4. 작성자

-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(02-3705-1282)

【참고】 비용추계

○ 전제 및 방법

- 1) 물가상승률 미반영
- 2)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- 3) 실태조사는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함

○ 총비용 : 1,475,41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 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실태 조사(제5조 제3항)	295,083	295,083	295,083	295,083	295,083	1,475,415
	소계(b)	295,083	295,083	295,083	295,083	295,083	1,475,415
총비용(b-a)		295,083	295,083	295,083	295,083	295,083	1,475,415

○ 비용 = 연간비용 × 5년(추계기간)

- 연간비용 : 295,083천원

- 책임연구원 = 24,635천원 = (3,079,435원×1명)×8개월
- 연구원 = 37,780천원 = (2,361,268원×2명)×8개월
- 연구보조원 = 37,882천원 = (1,578,429원×3명)×8개월
- 조사원 = 107,640천원 = (53,820원×40명×50일)×3건
- 자료입력 / 정리원 = 16,146천원 = (53,820원×30명×10일)×20건
 ※ 6,000 가구조사(조사원 1인 3가구 조사, 자료입력 / 정리원 1인 20가구 입력)
- 유인물제작 = 20,000천원
- 조사답례품 = 36,000천원(6,000가구×6,000원)
- 여비 = 5,000천원
- 연구재료비 = 10,000천원

※ 실태조사 관련 참고자료

제 목	목 적	대 상	조사내용 (예산액)	실시기관	실태조사결과 반영내역 (예. 특정 사업 등)
서울복지 실태조사	복지정책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	서울시 거주 3,798가구(1차), 3,000가구(2차)	서울복지실태조사 2013년 : 347백만원 서울복지실태조사 2015년 : 290백만원	한국보건사회연구 원, 서울연구원	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시 활용(복지성과지표 등)